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589

발의연월일: 2023. 8. 1.

발 의 자:김용판·서범수·박덕흠

강대식 · 김영식 · 정우택

황보승희 · 박대수 · 강기윤

전봉민 • 백종헌 • 권명호

하영제 • 박성민 의원

(14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초연결사회의 대두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형태와 양상의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시·도 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나, 전국 15개 시·도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에서만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며, 전담부서 중 일부는 한시조직으로 관리되거나 출연금이나 보조금 없이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여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 연구원의 재난안전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장

이 지역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연구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71조의3(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의 수립 지원
-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지원
-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
-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문ㆍ지원
- 5. 그 밖에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실 > 제71조의3(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무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클런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 가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막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산 · 도 또는 시·군·구 안전를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를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계 기가 및 안전관리 기계 기가 및 안전관리 기계
지역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를 련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결 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결 장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막 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상자를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를
변한 정책과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막 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술의 수행한다. 리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술의 수업지원 기계획의 수업지원 기계획의 수업지원 기계획의 수업지원 기계획의 수업지원 기계기 기계
·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재막한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기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기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제 인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반자 기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기
안전연구센터를 설치 또는 2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2 - 도 또는 시・군・구 안전를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
정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기본 한도 또는 시·군·구 안전를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를
<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연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분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시간 - 도 또는 시간군가구 안전원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원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 •도 또는 시•군•구 안전을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
수행한다.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 •도 또는 시•군•구 안전화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기
1.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 •도 또는 시•군•구 안전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
·도 또는 시·군·구 안전 리계획의 수립지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
<u>리계획의 수립지원</u>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
2. 제10조의4에 따른 지방자 ²
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예산의 사전검토 지원
3.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9
전관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학
조사 • 연구
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9
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 자
<u>• 지원</u>

	5. 그 밖에 지역의 재난 및 안
	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지역
	사회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
<u><신 설></u>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연구
	센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u><신 설></u>	<u>있다.</u>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신 설></u>	
<u><신 설></u>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 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
<u><신 설></u>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u><신 설></u> <u><신 설></u>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 연구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